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33

제출년월일 : 2026.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고령층은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에 취약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후유증 중증화 위험성이 높아 기존 취약계층 고령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범위를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노년기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규정한 내용 삭제

나. 지원대상(안 제2조)

-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서 65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

다. 지원절차(안 제5조)

-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증빙자료의 간소화

라. 부칙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시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77세 이상,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70세 이상 구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10. 15.~2026. 11.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상 취약계층”을 “이상”으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증빙자료를”을 “신분증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시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77세 이상,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70세 이상 구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이상 ---------- ---------- ------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 ----------.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 ---------- ----------

1. 신분증	<삭 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규칙」 제40조에 따른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나. 조례안 제3조(지원내용)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1인별 지원 비용: 최대 100,000원(백신비 + 시행비*)

*백신비: 80,000원(생백신), 160,800원(사백신) / 시행비: 20,000원

나. 접종대상

(2026년 8월 주민등록통계 인구 기준)

연도	대상자 구분	전체대상자	접종인원	비고
1차(2027년)	77세 이상	25,275명	8,840명	77세 이상 대상의 35%
2차(2028년)	70~76세	25,278명	8,840명	70~76세 대상의 35%
3차(2029년)	65~69세	25,411명	8,890명	65~69세 대상의 35%
매년(2030년~)	65세 도래자	4,300명	1,500명	매년 65세 도래자의 35%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년	합계
세입	소계(a)	-	-	-	-	-
세출	○ 접종비용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소계(b)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 총 비용(a-b)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매년)	합계
기타(구비)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합계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5. 덧붙이는 의견

○ 기존 지원(65세 이상 취약계층 5,064명 대상 55,000천원 소요) 대비 확대 지원(65세 이상 어르신 80,264명 대상) 시 2,587,000천원 증액

○ 대상자수는 인구변화(전입·전출, 사망 등)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백신비 및 시행비 변동되더라도 지원 비용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증진과 오은혜
연 락 처	02-3153-909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백신비 및 시행비: 서울의료원 시단가계약 금액 및 질병관리청 시행비 공고가

2. 인구수: 2026년 8월 31일 주민등록통계 기준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해당연령에 포함되는 도래자 인구까지 포함 기준